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47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김문수 · 이수진 · 김우영
주철현 · 민병덕 · 민형배
신정훈 · 양부남 · 김현정
조계원 · 이강일 · 권향엽
최혁진 · 문금주 · 이광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그 금전의 임의변제에 있어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법률행위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의 목적물인 금전의 지급청구 및 수령 또한 적법한 대리권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는데, 최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승소 후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본인의 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

우 본인지급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기관이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금전 수령에 대한 별도 수권
규정을 요구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임의변제의 절차”를 “직접 지급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경우, 승소한 당사자로서 금전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기관(이하 “지급기관”이라 한다)에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금전은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 본인으로부터 금전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수령대리인”이라 한다)이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작성된 금전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급기관은 수령대리인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전지급 청구가 접수된 사실 및 청구한 수령대리인의 성명
2. 금전지급 청구의 기초가 된 국가소송의 사건번호 및 판결 요지
3. 금전지급 시기 및 금액
4. 권리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위한 절차

④ 권리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 금전을 수령할 의사를 지급기관에 표시한 때에는 지급기관은 권리자 본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급기관은 본인이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한 날부터, 대리인이 청구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지급기관은 수령대리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리자에게 금전지급 일자, 지급금액 및 금전을 수령한 수령대리인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이 조의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⑨ 그 밖에 금전지급 및 수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확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으로서 금전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 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 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조(직접 지급 원칙 등) ① -- ----- ----- ----- -----경우, 승소한 당사 자로서 금전의 지급을 받을 권 리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지급기관(이하 “지급 기관”이라 한다)에 금전의 지 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 설>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 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 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 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 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 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 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 의 장으로 한다.
<신 설>	2. 제1호 외의 금전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신 설>

<신 설>

<신 설>

소관행정청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금전은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 본인으로부터 금전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수령대리인”이라 한다)이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작성된 금전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급기관은 수령대리인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전지급 청구가 접수된 사실 및 청구한 수령대리인의 성명
2. 금전지급 청구의 기초가 된 국가소송의 사건번호 및 판결 요지
3. 금전지급 시기 및 금액
4. 권리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위한 절차

④ 권리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신 설>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 금전을 수령할 의사를 지급기관에 표시한 때에는 지급기관은 권리자 본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급기관은 본인이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한 날부터, 대리인이 청구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지급기관은 수령대리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리자에게 금전지급 일자, 지급금액 및 금전을 수령한 수령대리인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이 조의 통지는 「행정절차

<u><신 설></u>	<u>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의 방법</u> <u>으로 한다.</u> <u>⑨ 그 밖에 금전지급 및 수령</u> <u>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
--------------------	---